

2020년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

「구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 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에 따라 2020년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8일

구리시장

2020년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

2020. 6.

구 리 시

2020년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

- ◇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,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민주성·투명성·책임성을 확보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
- ◇ 근거법령
 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
 - 「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

1 2020년 추진방향

재정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을 통한 「재정민주주의」 실현



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실화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주민 대표성·전문성 확보
 -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 위촉 ('20. 5. 19.)

-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
- 제안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심사 및 의견 반영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

②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

- 지역경제 활성화, 주민복지 실현 등 구리시 재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실시 (홈페이지, 생생문자, 서면 설문조사,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통한 의견수렴 등)
- 구리시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코너를 통해 주민제안 상시 접수
- 각 동별 주민대표기구를 통한 주민숙원사업 등 제안 공모 (신규 도입)
 - ⇒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대표기구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기대

③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

-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완료 시까지 예산부서-사업부서-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과 연계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
 - 1차 예산부서 분류, 2차 사업부서 검토, 3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실질적으로 추진가능한 사업 선정
 - 2019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(투자사업) 평가과정에 주민 참여
 - :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평가 실시

2

세부 운영계획

1 2020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계획

○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역량강화

⇒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기존위원의 연임 없이 제2기 위원회 신규 구성 완료

- 위원수 : 18명 (당연직 1명, 위촉직 17명)

- 임 기 : 2년 ('20. 5. 19. ~ '22. 5. 18.)

○ 주요 일정

월별	주요내용
5월	○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
6월	○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
7월	○ 주민참여예산위원회(1차) -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보고 -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(온라인 교육 등 활용) - 2019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(투자사업) 평가결과 확정 ○ 설문조사 및 주민제안사업 공모 실시 (2020. 7. 1. ~ 7. 31.)
9월 ~ 10월	○ 주민참여예산위원회(2차) - 주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 - 주민제안사업 공모신청서 심사

※ 상기 일정은 구리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 2021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실시

○ 설문조사 절차



- 설문기간 : '20. 7. 1. ~ 7. 31. (1개월간)
- 설문대상 : 구리시민 또는 구리시 근무 직장인 및 사업주
- 설문방법 : 시 홈페이지, 생생문자(모바일), 서면 설문지 등
- 설문내용
 - 2021년 예산편성 방향 및 중점투자부문 우선순위 조사
 - 공약사업 등 시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사

③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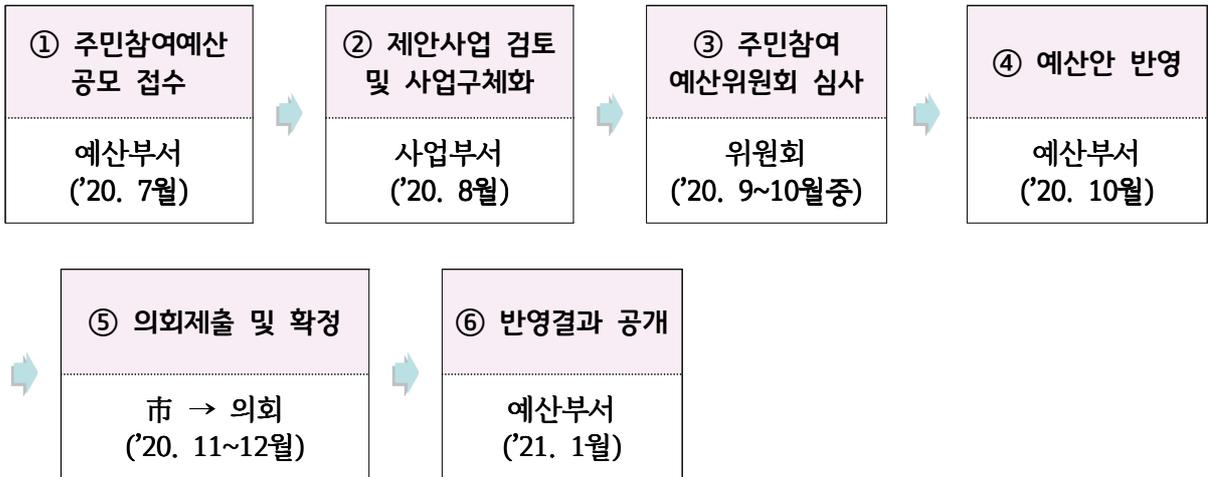
-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총규모 : 10억원 이내
- 참여자격 : 구리시민 또는 구리시 근무 직장인 및 사업주
- 참여유형별 구분 및 내용

구분	제안자	제 안 내 용
시민제안형	일반시민 (개인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○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○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○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
읍면동 자치계획형 <small>*신규도입</small>	동별 주민대표기구 (주민자치회 또는 통장협의회)	

《 공모 제외 대상 》

-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업
- 기 추진중인 사업이거나 행사성사업(프로그램)인 경우
 - * 단,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추진방향(계획)의 변화로 사업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제안은 인정
-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(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)
-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민원성격의 사업
- 사유지 내(개인, 법인 등)에 시행되는 사업
- 특정 개인 및 단체 등에 지원하는 민간 보조지원 사업
- 상급기관, 언론기관 등에서 지적된 사업
- 주민 간의 다툼이 있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
- 단순 민원처리, 시설운영 등에 투입되는 사업
- 타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
- 기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, 행사성 경비 등

○ 제안사업 공모절차



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접수

- ♣ 집중접수기간 : 2020. 7. 1. ~ 7. 31.(1개월간)
- ※ 홈페이지 내 연중 상시접수 가능, 집중기간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 심사
- ♣ 접수방법 : 홈페이지, e-mail, 우편, 방문접수 등

② 제안사업 검토 및 사업구체화(사업부서)

- ♣ 사업부서에서 부적격 검토, 유사사업 통폐합, 사업유형 분류 등
⇒ 사업담당자는 현장 확인 후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
- ♣ 사업담당자와 제안자가 협업하여 사업규모 구체화 및 수정·보완
- ♣ 예산팀에서는 구체화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

③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사 및 확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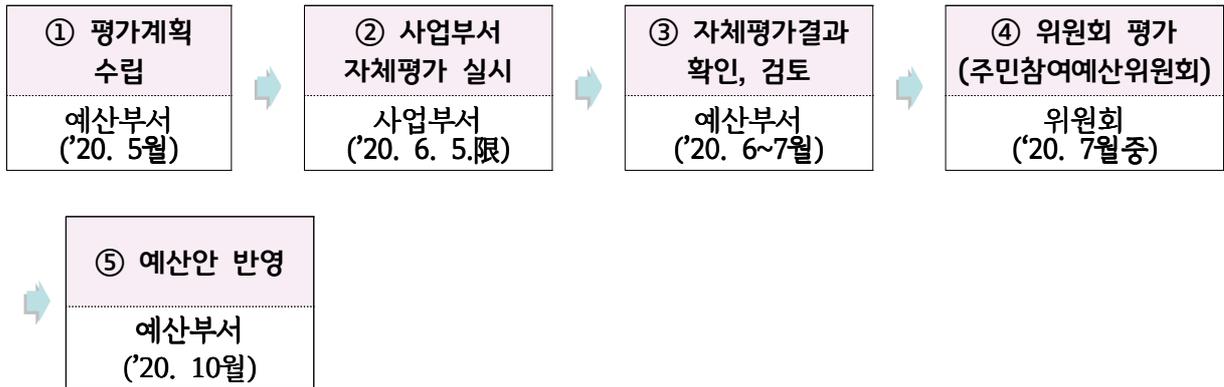
- ♣ 심사내용
 -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토론
 - 대상사업 규모 내 우선순위 및 예산액 결정(조정)

④ 市 주요재정사업(투자사업) 평가에 주민 참여

○ 2019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(투자사업) 평가에 주민 참여

: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평가 실시

○ 주요재정사업(투자사업) 평가 절차



○ 평가대상 : 2019회계연도 투자사업

- 총사업비 2억원 이상(자체재원) / 일반 및 특별회계 / 이월사업 포함

○ 평가결과 활용 : 사업별 5단계*로 등급화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반영

등급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평가점수	90점 이상	89~80점	79~70점	69~60점	60점 미만
비율	5% 미만	15% 미만	60%	20% 이상	
예산반영	증액가능	증액가능	유지	10%이상 삭감	미반영

□ 지방재정법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(이하 "주민참여예산기구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)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청회 또는 간담회
2. 설문조사
3. 사업공모
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

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구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

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, 사업공모,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참고 2

2020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

제안자	성 명	*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징구		
	주 소 (거주지/사업장)			
	연 락 처		이 메 일	
제안사업 내용				
사 업 명				
사업대상 (수혜자)				
사업목적 (제안 취지)				
소요예산	천원 / 사업기간 : 2021.00.00. ~ 00.00.(최대 1년)			
사업내용	<p>※ 작성시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대상(수혜자), 사업량,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(추정액)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- 세부계획은 별도 첨부 가능 			
2020년 7월 일				
구리시장 귀하				

사업 위치도

현황사진

2020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「2020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」 신청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'개인정보보호법'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·관리되며,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·제공 동의

1)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

경기도는 「2020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」 신청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가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

나. 개인정보 수집방법 : 구리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및 이메일, 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신청서를 통한 수집

다. 이용기관 : 구리시

2)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 및 보유·이용기간

「2020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」 선정 및 사업참여 등을 위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2년간(단, 예산편성사업은 5년간)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.
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	보유 및 이용 기간
성명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	「2020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」 선정 및 사업 안내사항 전달 등 사업관리	신청접수일로부터 2년간 (단, 예산편성사업은 5년간)

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. 정보주체는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「2020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」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.

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합니다. 성명: _____ (서명)

※ 개인 신청자의 경우 공동제안일 경우 신청자 전원 작성 / 단체 신청의 경우 대표자 작성